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6월호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 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나.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 금융투자협회 규정

- 가.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 제정 및 관리)

나.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건별 포상 한도 기준금액 증액)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023/5/2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2022년 10월 6일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 및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 제정·관리(제6조 제4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감독기관(금감원)이 제정하도록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준수 의무 명확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 가중사유 단서 추가(별표 7)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 개선 유도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단서 조항 마련

• 회사가 중요한 취약 사항과 관련하여 감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취약점을 개선하였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해당 취약점 및 시정계획을 기재하고 계획대로 이행한 경우

□ 회계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 수준 완화(제26조, 별표 8)

— 신고자가 부정행위의 주도적 행위자가 아니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종 부과 과징금 전액을 면제

—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통보를 수사업무 자료 송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양정 시 반영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제개선 사항(별표 9)

—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진행 중인 회사, 소규모 회사의 감사인에 대해 내부회계위반 과태료의 50%를 감경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되어 비상장사와 유사한 내부회계 규제를 받게 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위반 결과를 '경미'로 양정

□ 제재 정보 공개 관련 규제개선 사항(제38조, 제39조)

- 위법행위의 재발 방지, 제재 투명성·공정성 제고,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과실 위반행위는 공시대상에 포함 등

나.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2023/5/2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022. 10. 6.)의 후속조치로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한 유인을 제고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 정비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건별 포상 한도 기준금액 증액(별표 제2호)

-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고, 등급별 기준금액도 전반적으로 상향

[부정행위의 중요도별 포상금 기준금액]

(단위: 천원)

구분	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주된 조치	포상금 기준금액
1등급	고의Ⅱ단계 이상의 조치	1,000,000
2등급	고의Ⅲ~Ⅴ단계 조치 (중과실 가중시 최대조치 포함)	500,000
3등급	중과실Ⅰ~Ⅴ단계 조치 (과실 가중시 최대조치 포함)	300,000
4등급	과실Ⅰ~Ⅲ단계 조치 또는 경고 또는 주의 (고의 감경시 최소조치 포함)	30,000

□ 기여도 산정 항목 중 정성적 요소 최소화(별표 제3호)

- 차감요소 중 자의적 또는 정성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세부 산정항목을 조정·단순화

□ 금감원장 조치에 대한 증선위 포상 심의·의결 근거 명확화(제8조)

- 증선위의 포상 심의·의결 대상에 금감원장(경고 또는 주의)도 포함되도록 근거를 명확화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사회책임투자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한시적 면제)

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미국달러선물 · 옵션 이론가격 산출시 USD SOFR OIS금리로 변경)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3/5/8 개정 · 2023/5/11 시행)

1) 개정 이유

- 사회책임투자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기간을 연장하고, 면제하는 상장수수료의 범위에 추가상장수수료 및 재상장수수료 등을 포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사회책임투자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한시적 면제(별표10 제4호 가목 7), 제5호 나목 4))
 - (면제대상)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등록하고 상장을 신청한 채무증권 및 상장규정 제111조에 따른 수익증권
 - (면제금액)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각각의 전액을 면제하되, 등록 취소시 면제금액 납부 의무 부과
 - (면제기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3/5/24 개정 · 2023/5/30 시행)

1) 개정 이유

- LIBOR의 산출 중단 예정(2023. 7.)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조성제도 취지에 부합한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2) 주요 내용

- 미국달러선물 · 옵션 이론가격 산출시 사용하는 외화금리 파라미터 중 LIBOR를 USD SOFR OIS(Overnight Index Swap)금리로 변경(별표 12 및 별표 17)
 - 거래소가 지정하는 국제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전일의 미국달러 현물환거래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거래소에 제공하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년, 3년 만기 USD SOFR OIS(Overnight Index Swap)금리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평균금리로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를 선행보간하여 산출된 금리

- 시장조성호가 제출 종목을 시장조성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명확화(제81조 제2항)

- 기타 인용조문 개정 및 이론가격 파라미터 제공업자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 등(제90조의3, 별표 1, 별표 12, 별표 17 및 별표 20)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파생결합증권 판매 위·수탁에 관한 사항 신설)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2023/5/11, 2023/5/12 개정·시행)¹⁾

1) 개정 이유

- 직판 자산운용사의 운용감시 내부통제 의무 등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예탁금 계좌관리에 관한 내부통제 절차 개선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함
 - 최근 금감원의 직판 자산운용사의 횡령사고 관련 내부통제 점검 결과 직판 자산운용사가 법상 운용 감시 의무 등을 인지 못하였거나, 투자자예탁금 계좌관리에 관한 내부통제 절차 미흡사항 확인
- 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의 위·수탁에 필요한 내부통제 관련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일부 개정하기 위함
 - 금융위는 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의 위·수탁을 허용하되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금융투자업규정 개정(2023. 4. 26.)

2) 주요 내용

- 일반 사모펀드 판매사의 핵심상품설명서 등 사전 검증 의무(제100조의2)
 - 일반 사모펀드 판매사 등이 이행하여야 할 핵심상품설명서와 집합투자계약의 부합 여부 등의 사전 검증 의무를 명확화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4 제3항
 - 일반 사모펀드를 직접 판매하는 집합투자업자도 자사 펀드 판매 시 사전 검증 의무가 있음을 명확화
- 일반 사모펀드 판매사의 운용행위 점검 의무(제100조의3)
 - 일반 사모펀드 판매사가 이행하여야 할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 명확화(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금융위원회 고시(제2023-23호)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고시 시행일(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 핵심상품설명서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 요구할 의무 명확화(자본시장법 제249조의4 제5항)
 - 일반 사모펀드를 직접 판매하는 집합투자업자도 자사 펀드 판매 시 운용행위 점검 등의 의무가 있음을 명확화
- 일반 사모펀드 직판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이체 관리(제100조의4)
- 일반 사모펀드 직판 집합투자업자가 관리하는 펀드 매수 예정 대금 및 환매 대금 등 투자자예탁금과 관련한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하여 투자자예탁금 계좌의 이체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 구축
 - 투자자예탁금을 이체 가능한 투자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등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은행 등 금융기관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사전 등록
 -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사전 등록이 어려운 경우, 회사 전산시스템(위탁 전산시스템 포함)에 사전 등록
- 파생결합증권 판매 위·수탁에 관한 사항(제38조의7 신설)
- (위·수탁 대상) 판매업무 위·수탁은 주가지수 및 이를 구성하는 개별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판매 업무만 위탁 또는 수탁함
 - (투자자보호) 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 수탁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품의 구조, 특성 위험도 등 상품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 위탁자의 내부규정 제정·운영여부 등을 확인
 - (손해배상책임) 위탁자와 수탁자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짐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